

「2013 2/4분기 공공근로사업」 참여자 모집 공고

군산시에서 추진하는 「2013 2/4분기 공공근로사업」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※ 지역공동체사업과 중복신청을 금지합니다.

- 사업명칭 : 2013. 2/4분기 공공근로사업
- 사업기간 : 2013. 4. 1 ~ 6. 30
- 모집기간 : 2013. 1. 28(월) ~ 2. 1(금), (5일간)
- 모집인원 : 57명

※ 세부사업별 모집계획 참조

○ 참여자격

-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(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)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%이하이면서 재산이 1.35억원 이하인 자

<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>

-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
- ② 실업급여수급자
- ③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(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)
- ④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(동절기 0.5ha 초과 농지경작자)
- ⑤ 접수시작일 기준,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(공공근로사업 포함)에 반복 참여 한 자(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), 단,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
- ⑥ 공무원 가족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
 -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
 -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
 -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
- ⑦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% 초과이거나 재산이 1.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
- ⑧ 연속 3단계 참여자 (그다음단계 참여배제), 1세대 2인이상 신청자
- ⑨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,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○ 신청서류 :

- 공통서류 :

1. 공공근로사업 신청서
2. 건강보험 등 정보제공 동의서 (본인, 배우자, 세대원, 건강보험부양자 전체)
3. 건강보험증 사본
4. 주민등록 등본
5. 세목별(자동차세) 과세 증명서(본인, 배우자, 세대원 전체)

- 추가서류 :

1. 단독세대의 경우 : 혼인관계증명서
2. 취업보호·지원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, 차상위 : 증빙서류 또는 관련 증 사본
3. 장애인 : 증빙서류 또는 관련 증 사본
4. 휴학생 : 휴학증명서

○ 근무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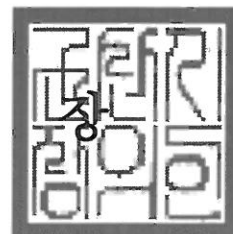
구분	근무형태	일당 및 주월차	부대비	비고
65세 미만	주5일 28시간	27,210원	2,500원	
65세 이상	주5일 15시간	14,580원	2,500원	

○ 참여신청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

○ 공고내용 문의처 : 군산시 투자지원과 ☎ 450-2760

2013. 1.

군 산 시



- 군산시 공고 제2013-149호

「201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」 참여자 모집 공고

근로약자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「201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」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※ 공공근로사업과 중복신청을 금지합니다.

- 사업명칭 : 2013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
- 사업기간 : 2012. 2월부터(4개월)
※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
- 모집기간 : 2012. 1. 28(월) ~ 2. 1(금), (5일간)
- 모집인원 : 따로 붙임
- 참여자격 :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이면서 재산이 1.35억원 이하인 자

<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>

-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
- ② 접수시작일 기준,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(공공근로 사업 포함)에 반복 참여 한 자(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), 단,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
- ③ 접수시작일 기준,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 자
-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
- ⑤ 공무원 가족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
 -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
 -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
 -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
- ⑥ 신청서,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(직장건강보험 가입자)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(신청서에 동의로 같음)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- ⑦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% 초과이거나 재산이 1.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
- ⑧ 사업참여자 결정 후,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거나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- ⑨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,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○ 신청서류 :

- 공통서류 :

1.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
2. 건강보험 등 정보제공 동의서 (본인, 배우자, 세대원, 건강보험부양자 전체)
3. 건강보험증 사본
4. 주민등록 등본
5. 세목별(자동차세) 과세 증명서(본인, 배우자, 세대원 전체)

- 추가서류 :

1. 단독세대의 경우 : 혼인관계증명서
2. 취업보호·지원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, 차상위 : 증빙서류 또는 관련 증 사본
3. 장애인 및 그 가족(세대원에 한함) : 증빙서류 또는 관련 증 사본
4. 휴학생 : 휴학증명서

○ 근무조건

구분	근무형태	일당 및 주월차	부대비	비고
65세 미만	주5일 28시간	27,210원	2,500원	
65세 이상	주5일 15시간	14,580원	2,500원	

○ 참여신청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

○ 공고내용 문의처 : 군산시 투자지원과 ☎ 450-2760

2013. 1. .

군산시청

